

군산동산중학교 생활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및 범위) 이 규정은 ‘군산동산중학교 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 생활에 관련한 제반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근거)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 제3항(교사의 교육권), 「동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전북 학생 인권 조례」에 근거한다.

제4조(규정 적용의 원칙)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 한 이유로 경시해서는 아니 되고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의거 최대한으로 보장한다.

제5조(학교 구성원의 책무)

- ①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생은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인권을 학습하며,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학교장은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 제30조 및 제31조에 의거하여 소속 학생에 학기당 2시간 이상 및 교직원, 학부모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인권 우호적인 학교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학교장은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관련 법령 및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의 범위 안에서 학칙 및 학교생활규정을 통하여 학생 인권에 관한 사항을 구성원 협의의 하에 제한할 수 있다.

제2장 학생 생활

제6조 (학생 인권 보호 원칙)

- ①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의 보호한다.
- ② 학생의 인권 관련의 제·개정 시에는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

제7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 ① 학생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차별의 정의와 종류에 따른 이유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가진다.
- ② 학생은 성적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8조 (학습에 관한 권리)

-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 ② 학교는 정규 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복장용의)

- ① 복장, 두발의 길이·모양·색상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교사·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 가. 청결을 유지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한다.
 - 나.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 ② 용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복장은 지정된 복장을 착용해야 하며 복장을 변형하여 착용하여서는 안 된다.
 - 단, 학교장이 허락할 때는 자유복을 착용할 수 있다.
 - 나. 남학생의 경우 바지를 올렸을 때 무릎 아래까지 올라오도록 한다.
 - 다. 여학생의 경우 스커트의 길이는 무릎선 위로 5cm 이상 올라오지 않도록 한다.
 - 라. 규정에서 벗어난 변형된 교복은 재변형할 2회의 기회를 준다. 재변형할 기한은 5일을 준다. <개정 2021. 2. 7.>
 - 마. 개인사정에 의해 등하교 시 체육복을 착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생활안전교육부의 허락 하에 착용을 허용한다.
 - 바. 교내에서는 부착물(명찰, 넥타이 등)을 교복의 옆옷에 상시 패용한다.
 - 사.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 아. 운동장을 포함한 실외에서는 실외화를 착용하고, 교내(운동장을 제외한 학교 내 모든 곳)에서는 실내화를 착용한다.

자. 동절기에 착용하는 타이즈의 색은 규제하지 않는다.

타. 삭제 <2021. 2. 7.>

카. 두발은 학생의 신분을 나타낼 수 있도록 단정하게 하되, 두발의 길이를 자율화한다. 단, 두발 변형을 위한 모든 헤어제품의 사용 및 염색은 허용하지 않는다. 단, 특기 신장에 필요한 경우나 신체 특이자는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1. 2. 7.>

파. 선크림과 색 있는 립밤을 제외한 화장품 및 실반지, 목걸이, 부착형 귀걸이를 제외한 장신구 사용은 허용하지 않는다. 단, 치료목적으로 착용하는 경우에는 생활안전교육부장의 허가를 얻어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2. 7.>

하. 날씨가 추우면 동복 자켓을 제외한 교복을 모두 갖춰 입은 상태에서 보온을 위한 목티 및 큰 겉옷을 착용할 수 있다.

③ 삭제 <2021. 2. 7.>

④ 하복의 착용 기간 중 생활복 착용을 허용한다.

제10조 (정보에 관한 권리)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② 학생은 학교에 대해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자치 및 참여의 권리)

①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에 대한 자율적 활동을 보장한다.

② 학교는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자치회를 통해 의견 제출권을 받는다.

제12조(징계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보,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학생 징계 때에는 학생의 성장을 돋는 방향으로 교육적 배려가 수반된 상태에서 실시한다.

제13조 (건강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여학생이 생리로 인하여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생리 중인 여학생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월 1회 이내에서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결석은 출석(또는 인정 결석)으로 한다.

④ 학교의 장은 보건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대인 관계에서 자세)

- ①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지키며 진실한 태도로 협조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② 따돌림, 폭력 등 학교 공동체의 평화적 관계를 깨뜨리는 일체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다.
- ③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
- ④ 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공손한 언행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 ⑤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문제는 대화로 해결한다.
- ⑥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언행을 삼가고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한다.
- ⑦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차별행위의 정의에 해당하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타인을 존중하고,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 ⑧ 다른 학생과 교제 시 제삼자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⑨ 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⑩ 서로 인사하고 배려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제15조 (이성 간의 예절)

- ① 남녀 학생 간 서로 존중하고 양성평등 의식을 갖고 실천한다.
- ②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③ 상대방의 일방적인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심할 경우 담임교사나 상담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제16조(시설 이용 및 환경)

- ①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스스로 분리수거하는 등 청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② 학교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훼손하지 않는다.
- ③ 특별교실과 체육관(강당)의 사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사용 규칙을 잘 지킨다.
- ④ 방과 후, 휴일 등에 있어 학교 시설 이용은 학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⑤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 ⑥ 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한다.

제17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①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②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절도 행위 포함)했을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제18조(폭력 등에 관한 대처)

- ① 교내에서 폭력이나 괴롭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조짐을 알게 될 경우나 관련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는 반드시 그 사실을 교사에게 알려야 한다.
- ② 스토킹이나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제19조(학급 및 수업에서 태도)

- ① 수업 등 교육활동의 시종 시간을 준수한다.
- ② 수업 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원활한 수업 진행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 ③ 교사의 허락 없이 본시 교과 이외의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다.
- ④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안팎에서 돌아다니지 않는다.
- ⑤ 쾌적한 수업 및 학급 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 정돈 등에 관한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다.
- ⑥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는 성실히 수행한다.
- ⑦ 수업 시간에 졸지 않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되, 불가피하게 수면이 필요할 경우 교사의 허락을 받는다.
- ⑧ 학급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학생의 소유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⑨ 수업 중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다.
- ⑩ 수업 중 휴대폰을 꺼내놓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제20조(휴식 시간)

- ① 휴식 시간(식사 시간 포함)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한다.
- ② 휴식 시간(식사 시간 포함)에는 타인의 휴식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 ③ 화장실 사용 시 질서와 위생 규칙을 지켜 청결을 최대한 유지한다.
- ④ 교사의 허가 없이 학교 밖을 출입하지 않는다.
- ⑤ 식생활관에서는 청결을 유지하고 질서를 잘 지킨다.
- ⑥ 일과 중 휴식 시간에 교정에서는 자전거, 오토바이, 각종 스케이트 및 보드를 타지 않는다.
- ⑦ 휴식 시간 중 체육 활동은 운동장과 체육관에서만 허용된다.
- ⑧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이나 체육 활동을 하지 않는다.
- ⑨ 화투, 카드놀이 등 사행성 오락 또는 도박을 하지 않는다.

제21조(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학생 개인 및 학교, 학교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성냥, 라이터, 폭죽, 드라이기, 고대기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2.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타인을 타격해 위해 할 가능성이 뚜렷한 물품들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4.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5.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6. 성적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8. 면허증이 없거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차량 및 오토바이

제22조 (상 · 벌점 시스템) <삭제 2021. 2. 7.>

제23조(표현의 자유)

- ① 학생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가 있다.
- ③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단, 학교의 장은 교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해진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에 관하여 제한할 수 있다.
- ④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 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
- ⑤ 학교장은 교지 등 학생 언론 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⑥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는 지정된 공간에 붙이도록 한다.

제24조(정보통신 윤리)

- ①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 ②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및 불법 유해 매체물을 반입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
- ③ 학교에서 영리를 취할 목적이나 상거래를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
- ④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25조(전자기기 사용)

- ① 교육활동 과정(조·종례 시간, 수업, 청소 활동, 학교 행사, 체험 활동)에서 휴대폰 등 전자기기 사용을 금하고, 조회 시간에 담임교사가 수거한다. 다만,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교사가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② MP3, PMP, 전자사전 등 기타 전자제품
 - 가.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만 허용한다.
 - 나. 수업 중 사용은 교과 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사용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 전자 기기 제출을 교사가 요구할 경우 학생은 그 요구에 응한다.
- ④ 제24조 제1항에서 예시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전자기기를 제출하도록 하여 담임교사 또는 생활안전교육부에서 보관할 수 있다.
 - 가. 보관기간은 당일로 한다. <개정 2021. 2. 7.>
 - 나. 분실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학교 측에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 단, 학교에서 보관 중 분실했을 경우에는 학교에서 보상의 책임이 있다.
- ⑤ 제3항에 따라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거부할 경우, 해당 학생을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⑥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전자기기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은 단계적으로 징계 조치할 수 있다.
- ⑦ 시험 기간 중 휴대폰은 등교 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보관하며, 시험 중 휴대폰을 소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 ⑧ 교내의 모든 정보화기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제26조(자치활동)

- ① 더불어 사는 삶을 배워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고, 자치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학급자치회, 학생자치회,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활동은 보장된다.
- ② 학생들은 학생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가 된다.
- ③ 학생 대표는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④ 동아리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조직할 수 있다.
- ⑤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⑥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권리와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자치활동의 조직 및 기능에 관련한 사항은 학생자치회 규정에 따른다.
- ⑧ 학생자치회 규정의 제·개정은 학생자치기구에서 한다.

제27조(동아리 활동)

- ① 학생은 방과후학교와 창의적 체험 활동과 연계하여 동아리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 ② 동아리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 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담당 부서에 등록 하여야 한다.
- ③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 ④ 승인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 ⑤ 승인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시상)

- ① 모범 학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표창할 수 있다.
 - 가. 모범 학생은 모범, 효행, 선행, 봉사 등의 뚜렷한 공적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사의 추천을 받아 시상한다.
 - 나. 학기당 1회(청소년의 달(5월), 학생독립기념의 날(10월))씩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생활안전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인성교육 실천주간행사 등 교내 행사에서 우수한 학생을 시상할 수 있다.
- ③ 그 외에도 학교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교직원 회의를 거쳐 표창할 수 있다.
- ④ 위 ①, ③항의 추천 학생은 교내봉사활동 이상의 징계 사실이 없는 자로 하며 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상한다.

제29조(기타)

- ① 교내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체험 활동 및 단체 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에 유의한다.
- ②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었거나 불법적이고 유해한 술, 담배, 본드 등 약물을 소지하거나 섭취하지 않는다.
- ③ 유해 업소 등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에 출입하지 않는다.
- ④ 행복하고 쾌적한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기초질서 및 공중도덕을 준수한다.
- ⑤ 상기 내용을 포함하여 교내·외에서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언행이 보일 시 학교 생활 교육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다.

제3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30조(학교생활교육위원회)

- ① 학생의 생활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 생활교육 담당부장, 생활교육 담당교사, 교무부장, 각 학년부장, 상담교사로 하며, 특정한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를 비상임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한다.
- ③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이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생활교육 담당교사는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제31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소집 및 기능)

-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생활교육 담당교사의 제청으로 교감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
-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제32조(의결 정족수)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재적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학생생활교육

제33조 (체벌 금지)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제34조 (교사의 권한) 생활교육에 있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적 상담 및 조언
2. 교육 환경 조성
3. 시정 요구
4.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5.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집 요구 및 의견 제출
6.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신청
7. 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

제35조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 ① 교사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한다.
- ② 교사는 학생의 행동 성찰 및 수정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훈계.훈육의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2. 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3. 지나친 수업 방해가 계속될 시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다.
 4. 적정한 수준의 학습 과제 부여
 5. 적정한 수준의 방과 후 지도
 6. 훼손 시설.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청소 명령
 7. 학부모 통보 및 상담
 8. 기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마련한 인권 우호적인 교육적 조치
- ③ 교사가 상담 및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수정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 (소지품 검사)

- ①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키고, 학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을 학생이 소지하여 사용 가능성이 현저할 경우 해당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 ② 소지품 검사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주기적으로 실시해서는 안된다.
- ③ 소지품 검사 시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고, 동성(同性) 교원 입회하에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가능한 한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 ④ 신체 내 휴대가 의심되는 소지품에 대한 검사는 여학생은 여교사, 남학생은 남교사가 실시한다.
- ⑤ 사안 발생 시 학교장에게 보고 후 협의를 통해 대처하되, 상황이 급박한 경우 선 대처 후, 학교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한다.
- ⑥ 소지품 검사는 공개적으로 실시해서는 아니 되고, 되도록 보호자의 동의를 얻는다.
- ⑦ 소지품 검사가 가능한 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1조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타인을 상해하거나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2. 제21조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본인, 또는 타인과 흡입 및 섭취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제37조(징계의 원칙)

-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 ②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 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 ③ 학교장이 징계를 할 때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종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반성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학교장이 징계를 할 때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 ⑤ 징계 대상 학생의 신상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내 봉사 :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하며,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한다. (수업 전.후, 점심시간 등)
2. 사회봉사 :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3. 특별교육 이수 : 기간은 위탁기관과 협의를 거쳐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출석으로 처리한다.
4.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5. 훈계·훈육, 교실에서 분리 조치, 상담지도,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 지도의 한 방법으로 한다.

제39조(징계의 방법)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 봉사 : 해당 학생은 등교할 수 있으나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생활안전교육부, 진로상담부, 해당 학년 교사, 교감, 교장 등의 지도를 받으며 봉사활동(교내 환경 미화, 교재·교구 정비, 또는 교원들의 업무 보조, 학교 인성교육 프로그램, 기타 적절한 활동 등)을 하여야 한다.
2. 사회봉사 : 해당 학생은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사회 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하루 최대 8시간까지 가능하며, 사회봉사 기관으로부터 대상 학생의 불참 및 이탈 통보가 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3. 특별교육 이수 : 해당 학생은 전라북도 교육감이 설치·지정·위탁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상담·치료를 받아야 한다. 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4. 출석정지 :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일시적으로 가해 학생을 학교에 출석치 못하게 격리시키는 것으로 가정학습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모님의 보호·관리가 어려울 경우 도서관학습, 상담실 상담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제40조(징계 통보 및 진술권 보장)

- ①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 및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품성.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또는 상담교사)로부터 청취한다.
- ② 위원회는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 ③ 위원회는 학생과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 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41조(심의 확정 및 재심 요구)

- ① 학교장은 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한 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 ② 위원회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선도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 ③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3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전체 직원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확정할 수 있다.

제42조(징계의 유보, 경감, 해제, 가중 등)

- ①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되어, 시험 참여 기간은 징계 기간에서 제외한다.
- ②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바르게 고쳐먹음)의 의지가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 ③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 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제43조(사후 조치)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가 종료된 학생을 수시로 관찰.지도하고, 지도 내용 및 결과를 기록한다.

제44조(징계의 기준)

학교생활규정 재·개정 방향이 제시한 관련 근거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각 학교에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19조 2항의 절차를 거쳐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장 규정의 개정

제45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 ①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군산동산중학교 규정개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인 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한다. 학생 위원은 전체의 4/10이상이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로 한다.
- ④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학생 대표는 학생들의 직접선거, 또는 학생회 등의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 ⑥ 교원 대표는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교원 대표는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여야 한다.
- ⑦ 학부모 대표를 선출하는 경우에는 모든 학부모에게 이에 대한 정보 및 기회를 부여하는 등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학부모 대표의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후보로 지원한 학부모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학부모 대표를 선출한다.
- ⑧ 위원회 위원으로 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학생·학부모·교원 대표로 선출된 위원들의 추천에 의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한다.
- ⑨ 위원회 구성 완료 후에는 학교 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 등에 대해 공고하여야 한다.
- ⑩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 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⑪ 위원회는 규정안을 심의함에 있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6조(개정안의 발의)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대의원회 의결서 첨부)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 ② 개정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 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정의 필요가 있을 시에는 시기에 상관없이 수시로 개정할 수 있다.

제47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8조(심의 및 결정)

- ① 위원회는 학교생활규정개정안이 발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 ③ 학생회 규정의 개정은 학생회 정기회의에서 개정한다.

제49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개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공포일(2021. 2. 17.)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 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군산동산중학교 학생자치회 및 선거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학생자치회는 학급자치회, 전체 학생자치회로 구분하여, 각각 군산동산중학교 학급(○학년○반)자치회, 군산동산중학교 학생자치회라 한다.

제2조(회원) 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또는 유예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3조(목적) 학생자치회는 회원의 권리와 복지를 신장하고 자율과 책임의 자치활동을 통해 건강한 민주시민의식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권리 및 의무) 학생자치회의 회원은 모든 학생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2장 학생자치회

제5조(기능)

1. 학생 생활(교과 활동, 학교 행사, 학생 간 갈등 및 분쟁, 환경 미화, 학생복지, 기타) 전반에 관한 학생 의견의 수렴 및 건의 활동
2. 학생 중심의 자발적인 연구, 예술, 체육, 취미, 봉사활동
3. 학교에 대한 건의를 위한 의견수렴 및 전달
4. 학교 운영위에 상정된 학생의 인권 . 복지 . 생활 관련 안건에 대한 협의 및 의견 개진
5. 학생총회 운영
6. 학생복지 및 활동과 관련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7. 기타 학생자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제6조(승인) 학생자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존중된다.

제7조(부서) 학생자치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1. 총무부 : 축제 등 학생자치활동 계획 및 기타 사항
2. 체육부 : 심신 단련을 위한 활동
3. 생활자치부 : 학생 간 갈등 중재, 기타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

4. 환경부 : 학교 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
5. 학습부 : 학력 향상에 관한 사항, 자율학습 등의 사항
6. 인권부 : 선거, 학생 인권 및 복지 관련 사항

제8조(학생자치회 임원)

- ① 학생자치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자치회장(이하 회장) 1명
 2. 학생자치회 부회장(이하 부회장) 2명
 3. 각 부서의 부장, 차장(이하 부.차장) 각 1인씩
- ② 학생자치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자치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회장, 부회장은 학생을 대표하여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 내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4. 각부의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하고, 차장은 부장을 보좌한다.

제9조(임원의 자격 요건) 학생자치회 회원은 임원이 될 수 있다.

제3장 선거

제10조(선거관리위원회) 학생자치회 회장, 부회장(이하 학생자치회장단) 선거 등의 공정한 관리 및 진행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제11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하 선거관리위원)은 3학년 각 학급에서 1명 내외의 추천 또는 지원을 받아 이 중 본교의 학생자치회 담당부서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선발하여 위촉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2조(선거일 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일 14일 전까지 선거 일시 등 선거에 관한 주요 사항을 학교 게시판 등에 공고한다.

제13조(학생자치회장단 후보 등록)

- ① 학생자치회장단 선출 방법은 민주주의 선출 방식에 준하여 당해 연도 학생자치회의를 통해 결정하여 시행하되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 ② 학생자치회장단 후보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 등록일 안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때 필요한 서류(후보자 추천장, 후보자 등록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 받는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된 서류를 심사하여 주요 사실에 허위가 있거나 후보로서 부적격한 경우에는 무효처리하고, 이 사실을 당사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④ 후보자가 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치된 사퇴 신고 서식을 이용하여 서면으로 신고한다.
-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첨 등의 공정한 방식으로 후보 기호를 결정한다.
-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 마감 및 후보 기호 결정 후, 그 결과를 학교 게시판 등에 공고해야 한다.
- ⑦ 1차에 한하여 재등록 기간을 주어도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학생생활규정위원회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임명한다.

제14조(학생자치회장단 선거 및 당선자 결정)

- ① 선출을 위한 투표는 전체 학생자치회 회원의 무기명, 직접,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 ② 선거인의 2/3 이상이 투표하여 유효투표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고 학교장이 임명한다. 단, 후보자가 1인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 ③ 학생자치회장단 선거는 해마다 12월 중에 실시하며, 임기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대의원회의의 결정으로 선거 시기 및 학생자치회장단 임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선거관리업무시행규칙) 이 규정의 선거관련 위임사항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선거관리업무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선거운동)

- ① 선거운동 기간은 일정이 정해진 날만 할 수 있다.
- ② 선거 관리 업무 종사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③ 합동연설회 소견 발표 시간은 5분 내외로 실시한다.
- ④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한할 수 있다.
- ⑤ 선거 포스터에는 입후보자의 기호, 사진, 성명, 약력, 공약, 선거 구호 등을 게재 할 수 있다.
- ⑥ 선거 포스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지정된 장소에 기호순으로 게시한다.
- ⑦ 선거 포스터 규격은 4절지로 하고 5매 이내로 한다.
- ⑧ 합동연설회 소견 발표는 투표일에 기호 순으로 한다.
- ⑨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한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입후보 등록을 무효화할 수 있다.

⑩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어떠한 장소에서라도 금품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없다.

제17조(개표)

1. 개표는 선거관리위원장과 참관인이 참석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한다.
2. 득표수의 공표는 개표가 완료된 직후 학교장 확인을 받아 선거관리위원장이 게시판에 공고한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표로 처리한다.
 - 가. 선거관리위원장의 인장이 날인되지 아니한 것.
 - 나. 어느 후보자에게도 투표하지 아니한 것.
 - 다. 2인 이상의 입후보자에게 기표한 것.
 - 라. 기표구를 사용하지 않고 문자 또는 기타 표시를 한 것.
 - 마. 기타 선거관리위원 다수가 무효표로 인정한 것.

제18조(당선무효) 선거기간 중 제16조를 위반한 사례가 발견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19조(보궐선거)

1. 학생자치회장(부회장) 보궐선거는 학생자치회 대의원회에서 실시한다.
2. 학생자치회 재적 대의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학생자치회장(부회장)으로 선출하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1차 투표 결과 1, 2위 득표자로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득표자를 학생자치회장(부회장)으로 선출한다.

제20조(학생총회)

- ① 학생총회는 학생자치회 회원 전체로 구성한다.
- ② 전교 학생들의 직접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에 열 수 있다.

제21조(대의원회)

- ① 학생자치회의 심의·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 ②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학생자치회장단
 2. 각 학급 실장 및 부실장
- ③ 대의원회의 의장은 학생자치회장이 맡는다.
- ④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자치회의 사업계획·사업보고 심의 및 승인
 2. 예·결산 심의 및 승인
 3. 집행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 처리

4. 집행위원회의 각 부서 부장 및 차장 임명 동의안 인준
 5. 학생자치회규정 및 선거관리업무시행규칙의 제·개정 안 심의·의결
 6. 기타 필요한 사항
- ⑤ 대의원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의원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2. 정기회는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회는 대의원 1/3 이상 또는 학생자치회장 및 학교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3. 대의원회의에서 일반 안건에 대한 의결은 재적의원 2/3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4. 대의원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해당 학년도에는 재상정 할 수 없다.
 5. 학생자치회 담당 교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학교 상황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하거나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학교에 전달한다.
 6. 학생자치회장단과 기타 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집행부의 구상 및 활동에 대해 설명 및 답변을 한다.
 7.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내용 및 결과를 기록 · 보존하며, 교직원 및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22조(집행위원회)

- ① 학생자치회의 집행기관으로 집행위원회를 둔다.
- ② 집행위원회의 구성은 학생자치회장, 부회장 및 각 부의 부·차장으로 한다.
- ③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2. 사업계획(안) 작성
 3. 예산편성 요구 및 결산 보고
 4. 본교의 학생인권을 위한 생활규정 개정(안) 발의
 5. 기타 중요한 의안
- ④ 집행위원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집행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가지며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소집한다.
 2. 학생자치회 담당 교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학교 현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제23조(예산편성)

- ① 학생자치회의 예산은 학교에서 지원한 예산과 후원금, 기타 수익금으로 편성할 수 있다.
- ② 집행위원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후 10일 이내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의원회에 제출하고, 대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결산) 학생자치회장은 회계연도 만료 후 1개월 이내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5조(규정의 제·개정) 학생자치회 규정의 제·개정은 대의원 1/3 이상의 찬성 또는 집행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대의원회에서 재적의원 3/4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의결의 자율성 보장) 학생자치기구의 심의·의결은 그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제27조(학교 규정의 제 . 개정에 참여할 권리)

- ① 학생은 학교생활규정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학교생활규정 등 학교 규정을 수시로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③ 학교는 학교생활규정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자치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4장 학급자치회

제28조(기능)

- ① 학생 생활(교과 활동, 학급행사, 학생 간 갈등 및 분쟁, 환경 미화, 학생 인권 및 복지, 기타 학생자치회에서 위임 및 요구한 사항 등) 전반에 관한 학생 의견수렴 및 건의
- ② 학생 중심의 자발적인 연구, 예술, 체육, 취미, 봉사활동
- ③ 학급 규칙 등의 제정

제29조(부서) 학급자치회의 부서는 제7조와 같이 하거나 학급 자체로 구성할 수 있다.

제30조(학급자치회 임원)

- ① 학급자치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급회장(실장), 부회장(부실장) 각 1명
 2. 각 부의 집행부장 1명, 차장 1명
- ② 제1항의 학급회장은 대의원회의 대의원이 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급 자체로 차장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제31조(학급회장, 부회장 선거 및 당선자 결정)

- ① 학급회장, 부회장은 학급자치회 회원 전체의 무기명, 직접,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 ② 학급자치회장, 부회장 선거는 매년 학기 초(3월, 9월)에 실시한다. 단, 회원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2학기 선거는 하지 않을 수 있다.

제32조(학급자치회의 운영)

- ① 학급자치회 회의는 월 1회 정기회를 개최하며, 학급자치회 회원 과반수나 담임교사의 요구가 있을 때 학급회장은 임시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 ② 학급 회의의 의결은 회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의 경우 학급자치회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③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하며, 필요시 교직원 및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33조(규정 준용) 기타 학급자치회에 필요한 사항은 제2장 자치회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공포일(2018.9.17.)부터 시행한다.

부록. 징계기준 (2021년)

호	내 용	징 계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1	언행이 불량하여 징계가 요구되는 학생	○	○	○	○
2	두발에 염색이나 탈색을 한 학생	○			
3	교복을 인위적으로 변경하여 품위를 손상시킨 학생	○			
4	범법 행위를 하여 사법기관에 조사 완료 후 해당 범법 사실을 학교가 인지한 학생	○	○	○	○
5	교내·외에서 도박을 한 학생	○	○	○	
6	교내·외에서 음란물 소지·유포 및 시청	○	○	○	○
7	고사 중에 부정행위를 한 학생	○			
8	시험문제를 절취하거나 유출한 학생	○	○	○	○
9	교내·외에서 흡연 또는 음주를 하거나 강요한 학생	○	○	○	
10	유해 약물을 흡입, 복용, 투약한 학생	○	○	○	○
11	교내·외에서 타인의 물품을 고의적으로 훼손(절도포함)한 학생	○	○	○	○
12	타인의 물건을 사용하고 반환하지 않은 학생	○	○		
13	교내의 기자재나 물품을 은닉·반출한 학생	○	○	○	
14	사이버상에서 타인에게 폭언 및 강제행위를 하여 불쾌감을 주는 학생	○	○	○	○
15	사이버상에서 불건전한 모임을 운영하는 학생	○	○	○	○
16	불건전한 내용을 고의적으로 유포 또는 판매한 학생	○	○	○	○
17	학습기자재를 학습 목적 외로 사용한 학생	○	○	○	○
18	해킹을 통하여 공공기관 및 기타 전산망의 자료를 손상 및 유출한 학생	○	○	○	○
19	사이버상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사용한 학생	○	○	○	○
20	불법촬영, 녹음을 하거나 유포한 학생	○	○	○	○
21	교사에게 폭언(욕설, 모욕)이나 폭력을 가한 학생	○	○	○	○
22	교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시킨 학생	○	○	○	○
23	상습 또는 지나치게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따르지 않고 교권을 침해한 학생	○	○	○	○
24	징계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학교 생활교육위원회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함.	○	○	○	○